

심사결과보고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비고
458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580
----------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27.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7.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및 대전광역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광역단위 로컬푸드 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용어를 '지역먹거리'로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공동 브랜드 운영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하고,

- 전문용어 통일 (안 제1조~제6조 및 제11조, 제15조, 제17조~24조)
- ‘지역농산물’ 을 ‘지역먹거리’ 로 용어변경

- 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정비 (안 제3조제1항)
-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안 제6조제3항)
 - 위원 임기 삭제 및 위원회 구성·해산 규정 신설
- 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 삭제 (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류옥화)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전문용어 표준화 지침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대전광역시의 로컬푸드 정책 변화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비로 판단됨.
- 이에,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나 법적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구 지역먹거리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비상설화로 인해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향후 안전 발생 시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80
----------	------

제출연월일 : 2026. 7. 9.

제 출 자 :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의 전문용어를 통일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및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로컬푸드 공동브랜드가 운영됨에 따라, 자치구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농산물’을 ‘지역먹거리’로 용어 변경(안 제1조~제6조 및 제11조, 제15조, 제17~24조)
- 나. 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정비(안 제3조제1항)
- 다. 특정 성별 위원의 위촉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1항)
- 라.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안 제6조제3항)
- 마. 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대전광역시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

- 위원회(당연직 제외)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개선의견 반영

5) 입법예고 : 2026. 5. 22. ~ 6. 11. / 제출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농산물을”을 “지역먹거리를”로, “지역농산물 육성”을 “지역먹거리 육성”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농산물”(Local Food)이란”을 ““지역먹거리”(Local Food)란”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 수립·추진”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 수립)”을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농산물의”를 “지역먹거리의”로, “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을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중 “지역농산물”을 각각 “지역먹거리”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 실행)”을 “(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획 실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농산물”을 각각

“지역먹거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에”를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에”로,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위원회”를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농산물”을 “지역먹거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역농산물”을 “지역먹거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역농산물 업무팀장”을 “지역먹거리 업무팀장”으로, “지역농산물 업무담당자”를 “지역먹거리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역농산물에 대한 인증 및 표시”를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증 및 표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역농산물의 인증)”을 “(지역먹거리의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농산물의”를 “지역먹거리의”로, “지역농산물을”을 “지역먹거리를”로, “지역농산물 인증”을 “지역먹거리 인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역농산물”을 “지역먹거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을 “지역먹거리 생산·가공”으로 한

다.

제18조의 제목 “(지역농산물 생산)”을 “(지역먹거리 생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농산물”을 각각 “지역먹거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지역농산물 가공)”을 “(지역먹거리 가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농산물”을 “지역먹거리”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을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농산물이”를 “지역먹거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농산물을”을 “지역먹거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농산물”을 “지역먹거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농산물 소비”를 “지역먹거리 소비”로,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지역먹거리 판매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지역먹거리 저변확대”로, “지역농산물 농민장터”를 “지역먹거리 농민장터”로, “지역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역농산물”을 “지역먹거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복지와 연계한 지역농산물 활성화)”를 “(복지와 연계한 지역먹거리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농산물이”를 “지역먹거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지역먹거리 소비촉진”으로, “지역농산물 확산”을 “지역먹거리 확산”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지역농산물의 날)”을 “(지역먹거리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으로, “지역농산물”을 “지역먹거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u>지역 농산물을</u>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농촌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u>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u>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지역농산물</u>”(Local Food)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	<u>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u>지역 먹거리를</u> ----- ----- ----- ----- ----- <u>지역먹거리 육성</u> ----- -----. 제2조(정의) ----- -----. 1. “<u>지역먹거리</u>”(Local Food)란 ----- ----- ----- ----- ----- -----

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3. (생 략)

제2장 지역농산물

육성 · 지원계획 수립 · 추진

제3조(지역농산물 육성 · 지원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 · 지원계획(이하 “육성 ·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 ·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정책의 목표와 육성 · 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의 적정한 자금목표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 략)

--.

2. 3. (현행과 같음)

제2장 지역먹거리

육성 · 지원계획 수립 · 추진

제3조(지역먹거리 육성 · 지원계획 수립) ① -----

지역먹거리의 -----
---- 지역먹거리 육성 · 지원계획-----
----- 수
립할 수 있다.

② -----
-----.

1. 지역먹거리 -----

2. 지역먹거리-----

--
3. 지역먹거리-----

4. 지역먹거리 -----

5. (현행과 같음)

6.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농산물의 육성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역농산물 육성·지원계
획 실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산물 육성·
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농산물 육성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
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
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지역농산물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지역농산물 육성·지원위
원회 설치 등) 지역농산물 육성
·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
역농산물 육성·지원계획의

6. 지역먹거리 -----

--

7. ----- 지역먹거리-----

제4조(지역먹거리 육성·지원계
획 실행) ① -----
----- 지역먹거리 -----

-----.

② ----- 지역먹거리 -----

-----.

제3장 지역먹거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지역먹거리 육성·지원위
원회 설치 등) 지역먹거리 육성
· 지원에 -----

----- 지역먹거리 육성·지원
위원회-----
-----.

1. ----- 지
역먹거리 -----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3. (생략)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지역농산물 담당 실·과장

2. ~ 10.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
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
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
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2.·3.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1. 지역먹거리 -----

2. ~ 10.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회의) <삭제>

있다.

② (생 략)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지역농산물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지역농산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생 략)

제4장 지역농산물에 대한 인증 및 표시

제15조(지역농산물의 인증) ① 지역농산물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식품과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역농산물 관련 기관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역먹거리 업무팀장----- 지역먹거리 업무담당자-----.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지역먹거리에 대한 인증 및 표시

제15조(지역먹거리의 인증) ① 지역먹거리의 -----

----- 지역먹거리를 -----
-- 지역먹거리 인증-----.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먹거리 -----
-----.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지역농산물 생산·가공

제18조(지역농산물 생산) ① 지역 농산물 생산은 소규모 생산자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을 조직화함으로써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한다.

② 지역농산물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9조(지역농산물 가공) ① 지역 농산물 가공은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공동체 사업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② (생 략)

제6장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제20조(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①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들에게 지

제5장 지역먹거리 생산·가공

제18조(지역먹거리 생산) ① 지역 먹거리 -----

-----.

② 지역먹거리 -----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역먹거리 가공) ① 지역 먹거리 -----

-----.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

제20조(지역먹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① -----

지역먹거리가 -----

-----.

② -----

----- 지

역농산물을 제공하도록 급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노력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의 회사와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원과 이용자들이 지역농산물 판매장이나 직거래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한다.

제21조(농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농산물 농민장터(이하“장터”라 한다)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와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 ① 일반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 꾸러미

역먹거리를 -----
-----.

③ -----
-- 지역먹거리 -----
-----.

④ 지역먹거리 소비 -----

---- 지역먹거리 판매장-----

--.

제21조(농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장의 설치) ① -----
----- 지역먹거리 저변확대----- 지역먹거리 농민장터-----
----- 지역먹거리 전문판매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 ① -----
----- 지역먹거리-----

사업이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생활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3조(복지와 연계한 지역농산물 활성화) ①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노인·청소년·장애인 등)·저소득 계층(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지역농산물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제24조(지역농산물의 날)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산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농산물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며, 그 행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복지와 연계한 지역먹거리 활성화) ① -----

----- 지역먹거리가 -----

-----.

② 지역먹거리 소비촉진-----

----- 지역먹거리 확산-----
-----.

제24조(지역먹거리의 날) 지역먹거리의 소비촉진-----
-----지
역먹거리-----

-----.

관계법령

□ 농업·농촌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농업·농촌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업·농촌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별표] 농촌진흥청 소관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제2조 관련)

※ 용어의 띄어쓰기는 '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띄어쓰기에서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번호	분야	세부분야	대상 용어	원어	최종안 (띄어쓰기 포함)
8	농촌 진흥청	농림	로컬 푸드	local food	지역^먹거리

□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5조(공동브랜드 운영)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고유성 및 우수성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브랜드의 운영,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